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및 실태조사 (안 제4조 및 제5조)
-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 (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)
-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 (안 제13조)
-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(안 제14조)
-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(안 제15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기구의 설치 (안 제17조 및 제18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우리 도는 「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」를 근거로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써 지원해 왔으나, 동 조례의 “전략산업”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선정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고,
- 바이오산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8개 시·도*는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,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참 고

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8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-	-	-	19.12.30	-	21.12.29	23.05.18	-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17.09.14	-	19.05.30	-	20.06.18	22.04.25	-	20.07.15

나. 조례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조례안은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, 바이오산

업 육성위원회의 설치,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○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
- 안 제4조와 제5조는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‘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’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,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한 바이오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.
-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·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지원, 그 밖의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규정함.

○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입법예고('23. 3. 28.~'23. 4. 20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본 조례안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,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,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,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○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및 그에 따른 비용추계액은 각각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5년간 300백만원,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수당 5년간 7백만원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임.

- 다만 우리 도는 바이오산업 관련 「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」, 「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, 「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」 등 3개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,
- 「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」에 따라 ‘뷰티산업진흥 기본계획’과 ‘뷰티산업 진흥위원회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「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‘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’과 ‘천연물산업 육성 자문위원회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,
- 본 조례안에 따른 ‘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’ 및 ‘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’와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
-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,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,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점,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, 조례 내용의 정당성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이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관련 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·위원회와 본 조례안에 따른 종합계획·위원회 사이에 기능적 중복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